

## 수업평가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(이하 본교"라 한다)의 교수법 및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업평가에 대한 기준 및 절차,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수업평가는 정규 학기에 개설된 강좌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PASS과목, 비교과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는 수업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**제3조(수업평가 유형)** ① 수업평가 유형은 과목 유형과 교수방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(2017.6.9.개정),(2020.3.11.개정)

1. 과목유형은 이론, 이론과 실습, 실습으로 구분하되 수업의 가치, 수업전략, 교수자의 전문성/열성, 교수자의 성실성, 학습부담, 과제검토의 충실성, 평가공정성, 역량(능력)증진, 수업개선노력, 총평 등 총 10개 문항을 공통으로 한다. (2020.3.11.개정)

2. 교수방법은 강의식, 토론식, 팀프로젝트, PBL, 캡스톤 디자인, 플립러닝, 실기수업, e-Learning, 팀티칭, 하브루타, 원어수업, 동행수업으로 하고, 단, 교수방법은 대표적인 유형 2가지만 선택하여야 한다. (2020.3.11.개정),(2020.9.15.개정)

② 수업평가 문항은 과목 유형과 교수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. (2017.6.9.개정),(2017.12.11.개정),(2020.3.11.개정)

③ 수업평가 문항에서는 수업 개선에 초점을 둔 문항으로 구성하고, 문항 변경은 수업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 (2017.6.9.신설)

**제4조(평가기준)** ① 수업평가는 수강학생의 평가항목 별 점수로 산정한다.

**제5조(평가방법 및 시기)** ① 수업평가는 학기에 2회(중간, 기말)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2017.6.9.개정)

② 중간평가 결과는 교수의 자가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학기말 평가 결과를 수업평가 결과로 산정한다.

③ 수업평가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종합학사,시스템에서 해당 학기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 (2018.2.19.개정),(2018.2.27.개정)

④ (2017.12.22.개정), (2023.03.15.삭제)

⑤ 출석 미달자(출석일수의 2/3 미달)의 수업평가는 제외한다. (2019.2.19.신설),(2023.03.15.개정)

**제6조(주관부서)** ① 수업평가 제도의 운용 및 업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. (2019.10.24.개정)

1. 수업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수업평가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

3. 수업평가 결과 취합, 통보 및 보고에 관한 사항
3. 수업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
4. 수업평가 문항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5. 수업평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

② 수업평가 항목 개발, 결과 활용 및 기타 수업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업평가관리위원회를 두며, 교육과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. (2017.4.21.신설)

**제7조(평가결과의 활용)** ① 수업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, 교원 재임용 및 승진, 성과급, 강사 재임용 및 수업개선계획(CQI) 수립시에 반영한다. (2017.4.21.개정),(2019.10.24.개정)

② 수업평가 및 교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장은 전체 교원들에게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 주관 교수법 관련 연수 또는 강의를 이수하게 할 수 있다. (2017.2.17.개정),(2017.4.21.개정),(2023.03.15.개정)

③ 수업평가 결과가 한 과목이라도 75점 이하인 교과목 담당 전임교원은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 주관 교수역량 지원 프로그램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, 불참시 교원연구년제 및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한다. (2017.2.17.개정),(2017.12.29.개정),(2018.8.24.개정),(2019.10.24.개정),(2023.03.15.개정)

④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(전임, 비전임 포함)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강의 우수교원 포상 규정에 따른다. (2017.2.17.신설),(2019.10.24.개정)

⑤ 교과목 담당 교·강사는 수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학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. (2017.4.21.신설)

⑥ 수업평가 결과 교과목 평균 75점 이하 이거나 2회 연속 75점 이하 과목이 있는 전임교원은 승진 및 연구년제 선발에서 제외하며, 교수 개발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였으나 동일 교과목의 수업평가 결과가 해당 학기 2년 연속해서 75점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동일과목에 대한 수업을 제한한다. (2017.12.29.신설),(2018.8.24.개정)

⑦ 수업평가 결과가 한 과목이라도 75점 이하인 교과목 담당 강사는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 주관 교수역량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2회 불참자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. (2019.10.24.개정),(2023.03.15.개정)

⑧ 중간수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간 수업개선계획(CQI)을 수립하고 남은 학기 수업에 반영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 (2020.2.25.신설)

**제8조(수업평가 결과 공개)** ① 교육의 책무성 및 수업개선을 위해 강의를 담당한 교·강사는 해당 수업평가 결과를 종합학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다. (2018.2.19.개정)

② 겸임교원 및 외래강사의 수업평가결과는 전공 주임교수에게 공지한다. (2018.2.19.개정),(2019.10.24.개정),(2020.2.25.개정)

③ 교학처는 전체 강의 교수의 상위 10% 및 수업평가 결과 75점 이하인 교과목 담당 교수 명단을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통보한다. (2017.2.17.신설),(2018.2.19.개

4-1-11 수업평가에 관한 규정

정),(2018.8.24.개정)

④ 평가결과는 학생에게 수강신청시 강좌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학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. (2017.12.29.신설),(2017.2.19.개정)

⑤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평가 분석결과자료집을 공유할 수 있다. (2017.12.29.신설)

⑥ 수업평가결과는 수업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점검 하여 개선하도록 한다. (2017.2.19.신설)

**제9조(기타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, 규정에 따른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4-1-11 수업평가에 관한 규정

<별표 1> - 삭제